1	,	의안과 -						
섭	宁	(20				:	)	

수신 : 의 장

제 목 :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20년 2월 1일

청	원	인
---	---	---

성 명: 정수아

주 소: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정수아

(인)

)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70 전 긴	성	명 : 정수아
건 명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형법 개정청원안
소개년월일		2020 년 03 월 20 일

## 소개 의견

청원인 정수아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의원입니다.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형법 개정청원안>입니다.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의 보호 법익 자체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입니다. 보호 법익에서 봤을 때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접촉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 여부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폭력과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및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청원서

####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강간죄 처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강간죄를 성립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을 당했어도 형법이 인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성폭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의심이 뿌리 깊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어도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고혐의를 받고 거꾸로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이며, 디지털 성범죄 등은 양형기준 조차 제정되지 않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판례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었던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으나 형법상과는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2019년 4월 박씨는 A씨가 저지른 강간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며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다.',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다.' 등의 이유로 박씨가 거부했음에도 A씨가 범행을 저지를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 82.6%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되었으며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연대회의가 전국 131개 성폭력상담소 중 66개의 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1월부터 3월간 이뤄진 강간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사례는 735건으로 7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로 성폭력 피해사례는 상습적인 위협이나 고립된 상황 등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와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성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쉽게 제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투운동의 여러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인사결정권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강간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행 범죄에 있어 증거를 들어 입증하긴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로 성립을 해야 할 경우, 사람 의 기억에 따른 사건 진술이기에 진술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으로 진술도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가해자 측에서 이런 현실을 악용해 피해자를 입막음 하기 위해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 추세이자 국제 사회의 권고 대상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들은 "국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9.6.13. 선고 2019도3314)에서도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의가 있었다 해도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 유무, 무의식, 공포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동의 없음'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입법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스웨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제297조(강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u>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u> <u>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정</u> 역에 처한다.		

청원인 성명 : 정수아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